

#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2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월 23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년 2월 13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적·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속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대행하고자,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탁·대행 추진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
-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구의회 동의)

#### 2) 위탁·대행 추진 필요성

- 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시설물 관리의 품질 제고

나) 공공서비스 제공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시흥2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이 입주한 공공복합시설인 금천종합복지타운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보장

3) 위탁·대행 사무 주요 내용

가) 대상사업 :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나) 대행기간 : 2025. 4. 16.~2028. 4. 15. (3년)

다) 대행기관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라) 소요예산 : 290,822천원(전액구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천종합복지타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년간 전문적 운영 경험을 갖춘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